

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. 5. 21.

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서	담당 직무내용
정책지원관	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(7급상당)	1명	임용일로부터 2년	중랑구의회 (의회사무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 83조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-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-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-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-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●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작성, 참석지원 등 ● 행정지원 등 그 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사진 및 영상촬영	임기제 지방행정서기 (8급상당)	1명	임용일로부터 2년	중랑구의회 (의회사무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진·영상 촬영 및 자료 편집 ● 본회의 등 인터넷 생방송 운영 ● 방송장비 유지보수, 방송실 관리 ● 의정 홍보게시판 유지관리 ● 행정지원 등 그 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2. 법령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-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

3. 응시 자격 요건

- 공통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)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-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(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요건)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사람

-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.
- 4.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,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: 다음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춘 자

※ 응시희망자는 자격 및 경력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<p>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(정책지원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성별·지역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 ▶ 연령제한: 20세 이상인 자 ▶ 아래 조건을 하나 이상 갖춘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▶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, 국회, 지방의회, 지방자치단체(출연·출자기관 포함), 공공기관, 연구소, 법인, 민간기업에서 행정, 정책, 법제, 소송, 법률해석, 법·제도연구, 예산회계, 감사 분야 실무경력 <p>※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의거, 실무경력은 최종경력기준,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경력증명서에는 관련 경력에 대한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를 상세히 명시)</p>

구 분	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임기제 지방행정서기 (사진 및 영상촬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성별·지역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 ▶ 연령제한: 18세 이상인 자 ▶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▶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(언론사, 기업체 홍보실, 광고홍보대행사 등) 등에서 사진·영상기반 홍보 업무 ※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의거, 실무경력은 최종경력기준,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경력증명서에는 관련 경력에 대한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를 상세히 명시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★ 우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. 사진 기능사, 포토샵, 일러스트 관련 자격증 소지자 3. 생방송 송출 기술이 가능한 자 4.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(실제 운전 가능)

※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**담당업무 및 직무내용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주당근무 시간, 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(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**

⇒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 **반드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6호 서식)를 추가 제출**

4. 근무조건 및 채용기간

분야	근무조건	임용기간	비고
정책지원관	주 40시간 (1일 8시간)	임용일로부터 2년	일반임기제
사진 및 영상촬영			

※ 공무수행상 필요 시 조기출근, 휴일근무,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5. 보수수준

-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신규임용자는 임용등급별 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 단,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%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할 수 있음

<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, 별표13)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
7급(상당)	70,782	<u>50,272</u>
8급(상당)	62,096	<u>44,296</u>

- ※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「공무원연금법(2018.9.21.자 시행) 적용
- ※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
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6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6.6.1.(월) ~ 6.5.(금), 평일 4일간(공휴일-6.3지방선거)
< 09:00~18:00, 중식시간 제외>
- 원서교부: 중랑구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jnc.go.kr>) 의회소식 / '고시·공고' 또는 중랑구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jungnang.go.kr>) '채용공고'의 공고문,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접수처: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사무국(중랑구청 6층) 의정팀
- 접수방법: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(등기) ※ **퀵서비스 및 택배 등 통한 접수 불가**
 - ▶ 우편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(신내동), 중랑구청 6층 의회사무국 의정팀
우편번호 02043
- ※ 우편접수의 경우, 응시원서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없음을 확인 후, 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
(예: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 명시, 시간제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명시 등)
- ※ 우편접수(등기)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
- ※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(7급 7,000원, 8급 5,000원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(우편접수는 유선통화 후 지정계좌로 증지료 계좌이체)
- ※ 우편접수,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(예정)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	면접시험		면접시험 합격자 발표
2026. 6. 9.(화)	사진 및 영상촬영	2026 .6. 11.(목) 10:00~12:00	2026. 6. 15.(월)
	정책지원관	2026. 6. 11.(목) 14:00~16:00	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- 응시자 자격.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응시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※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중랑구의회에서 별도 설정·시행

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, 직무적합성, 인성, 공직관,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다.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: 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**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**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7.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 1부(별지1호 서식)

- 응시수수료 :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(7급상당 7,000원/8급상당 5,000원)

※ 판매장소: 구청 4층 재무과

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응시원서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

② 이력서 1부(별지2호 서식)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(재직)증명서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

※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, 근무기간, 주당근무시간, 직위, 직급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(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
③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

-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

④ 직무수행계획서(별지4호 서식) 1부

-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분야의 담당직무와 연계하여 작성

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(학사 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 1부

- 대학교(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⑥ 자격증(사본) 등 증빙자료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⑦ 관련분야 실무경력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

- 증명서상에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, 직무내용, 직위, 직급,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(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
⇒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 반드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6호 서식) 추가 제출
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(주당 40시간 미근무)으로 근무한 경우, 반드시 '주당 근무시간' 명시

⑧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5호 서식)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, 경력인정범위,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

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
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
-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'보험가입 전체기간' 발급

⑩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6호 서식) 1부

⑪ 주민등록 초본(주소변동 무포함,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)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(별지7호 서식) 1부
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,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

8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,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자택주소, E-mail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증빙서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반환요청 가능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('18.9.21.)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 (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, 제50조 제1항 제1호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없을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및 중랑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채용 관련 문의: 의회사무국 의정팀 (☎ 02-2094-2062)